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18

발의연월일: 2021. 9. 28.

발 의 자:문진석・김민기・민형배

변재일 · 서영석 · 송갑석

이동주・이용빈・이정문

이형석 · 조오섭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 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부모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가 있는 가정을 비롯해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형제·자매인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우선 제공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형재자매인 아이와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호).

법률 제 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모 또는 형제자매인 아이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
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	선 제공)
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	<u>.</u>
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렁	해당하는 사람이 부모 또는
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	형제자매인 아이
당하는 사람의 자녀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